

(사)오픈플랫폼개발자커뮤니티 제반 운영규정

제정 2016.9.28. 제2차 이사회

1. 회원관리규정
2. 직제규정
3. 위임전결세칙
4. 인사규정
5. 복무규정
6. 보수규정
7. 여비규정
8. 수수료 등의 지급세칙

1. 회원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오픈플랫폼개발자커뮤니티(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자격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원의 구분)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픈플랫폼(IaaS, PaaS, SaaS) 관련 SW 및 HW 연구개발, 유통, 판매업체(법인)
2. 오픈플랫폼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개인)
3. 오픈플랫폼 관련 연구단체 및 임직원
4.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리더(개인)
5. 표준프레임워크 또는 오픈플랫폼 관련 개발자(개인)
6.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준회원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및 정회원 중에서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으로 한다.

제2장 입회

제4조(입회)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재입회) ①탈퇴된 회원이 재 입회를 원할 때는 제4조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명된 회원이 재 입회를 원할 때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본회 정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법인회비, 개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입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한 해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③법인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하며 개인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비) ①본회는 본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받

을 수 있다.

②특별회비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가지며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준회원은 의결권,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
5.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의 신고 의무

제5장 탈회 및 제명

제10조(탈회) ①회원이 탈회를 원할 때는 탈회시점까지의 회비를 완납하고 탈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제명) 회원이 정관 제7조 및 본 규정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